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December 2016, Issue 4

UPDATES 법률정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실시지침 확정

대리점법 시행을 위한 제반 규정 마련

살생물체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보험회사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재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선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최근 동향 –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발간

CASES 업무사례

- MBK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지분 98.63%를 에쿠온캐피탈에 매도
-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카버코리아 지분 60.39%를 인수
- 하나은행의 중국민생투자그룹 자회사 지분투자 관련 자문
-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HRSG 사업부문을 GE에 양도
- 전북은행 및 JB우리캐피탈의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 관련 자문
- 법원, 홈쇼핑의 모바일 주문 유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부당성 인정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최초의 제네릭 판매금지 사례
-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대출상품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의 범위
- 외국펀드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 ICSID 투자자-국가 중재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1심·항소심에서 집행 거부된 국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 두산밥캣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 우리은행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문
-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한국 지점 설립 본허가
- 특정 공공기관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과로 다른 모든 공공입찰 참가까지 제한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
- 미국 시애틀 소재 Amazon Phase VIII 빌딩 매입
- 의약품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요건을 실시한 특허법원 판결 소개

NEWS 새소식

수상소식

세계 100대 로펌 중 68위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Global 100 (2016)

아시아 50대 로펌 중 10위
- The American Lawyer Magazine's Asia 50 (2016)

4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ALB Korea Law Awards 2016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6

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Financial & Corporate 2017

17개 분야 Outstanding 선정 - Asialaw Profiles 2017

1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분쟁해결 분야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

M&A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Asian Legal Business M&A Ranking 2016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World Tax 2017

아시아 지역 Work-Life Balance 로펌 선정 - Euromoney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6



기업일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실시지침 확정

박종구 변호사(jkpark@kimchang.com)
박상택 변호사(sangtaek.park@kimchang.com)

부실징후기업의 신속·원활한 기업개선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2016년 8월 1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원샷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등의 심의기관으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6년 8월 18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이 확정되어 익일 시행되었습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적용됩니다. ‘과잉공급’ 판단 기준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2) 가동률, 재고율, 가격·비용변화율,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 지표 등 5개 보조지표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서비스업은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3)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위 과잉공급 판단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1) 소규모 합병 등의 요건 완화,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 상법에 대한 특례, (2)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 주식보유기준 규제, 계열회사 아닌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 등의 적용을 유예 내지 완화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3)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7월 28일 공개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적격합병 관련 사후관리 요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80%에서 70%로 완화, 의무 보유 대상인 피합병기업 고정자산에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 자산 제외) 등 세제혜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한 제반 규정 마련

박성엽 변호사(separk@kimchang.com)
박종국 변호사(jongguk.pak@kimchang.com)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22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12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리점법 시행령(안)’ 및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안)’(“과징금고시(안)”)을 마련하여 예고하였습니다.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법 시행령(안)

대리점법 시행령(안)은 (1)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고, (2)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인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활동 간섭의 구체적인 유형·기준을 규정하고, (3)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 등 대리점 분쟁의 조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4) 대리점법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징금고시(안)

과징금고시(안)은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 금액을 산정하고(단,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중대성에 따라 5억 원 범위 내에서 정액 과징금 부과), 법 위반 전력이나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이 입은 피해 정도, 전체 대리점 수 대비 피해 대리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60~80%의 부과기준율(정액 과징금인 경우 4억~5억 원), (2)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40~60%의 부과기준율(정액 과징금인 경우 2억~4억 원), (3)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20~40%의 부과기준율(정액 과징금인 경우 500만~2억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고시(안)은 기본 금액에 대한 가중 사유로서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50%), 장기간 법 위반 사업자(50%), 보복 조치(20%)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사유로서 자진시정(20%), 조사협력(20%)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이윤정 변호사(yjlee@kimchang.com)
전인환 변호사(inhwan.jun@kimchang.com)

최근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의약외품(치약 등), 화장품 등과 같이 기존에 문제되지 않았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과 관련하여 최근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은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제(Biocides), 특히 그 중에서도 과거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었던 살생물제인 CMIT, MIT 등의 위해성에 관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2016년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8월에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2016년 9월에는 치약을 대상으로 각각 살생물제(특히, 과거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사용 여부에 관한 전수조사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환경부는 살생물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살생물제관리법(BPR)'과 미국의 '연방 살충제법(FIFRA)' 등을 참고하여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는 별도의 법률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7일,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15종의 위해우려제품에,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 보조제, 살조제(Algicide)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안전기준 강화 (고시 시행일부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DDAC), Ethylene Glycol을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하는 경우의 함량 기준 신설
- 1,4-Dichlorobenzene의 탈취제 사용 금지
- Tetrachloroethylene을 스프레이형 코팅제에 사용하는 경우 및 Limonene을 섬유유연제에 사용하는 경우의 함량기준 신설

2. 표시기준 강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살균·항균·소독·방부·보존 등의 기능을 가진 경우,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살생물질(화학물질명, 독성있음) 첨가'로 표시하거나 또는 성분의 명칭(화학물질명), 성분의 기능, 함유량을 표시
- 위와 같은 경우, 사람 또는 동식물 및 환경에 대한 제품의 위해성과 효과에 대해 오해가 있는 문구('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표현을 제품에 표시할 수 없음
- 위해우려제품에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농도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표시 의무
- 세제류 제품에 알러지 유발 향료(벤질알코올 등 26종)를 일정 농도(사용 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사용 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사용한 경우, 향료 성분명칭 및 기능 표시 의무

보험

보험회사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재해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선고

안재홍 변호사(jhahn@kimchang.com)
신현욱 변호사(hwshin@kimchang.com)
이일석 변호사(ilsuk.lee@kimchang.com)

지난 2016년 9월 30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재해보험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16다218713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A는 2004년 5월 종신보험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자살면책 및 제한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체결한 뒤, 2006년 7월 자살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고, 보험수익자인 A의 남편 B는 사망일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 8월에 이르러서야 위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진행되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2.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또한,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특약에 따라 자살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청구기간이 지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보험사에게 자살면책약관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2015다243347판결)이 선고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는데, 위 판결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선고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보험사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재해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입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 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양영준 변호사(yjyang@kimchang.com)
장덕순 변호사(ducksoon.chang@kimchang.com)
엄승찬 변호사(seungchan.eom@kimchang.com)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 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출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6년 8월 17일 입법예고 되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그 동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범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인정 요건의 완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징벌적 배상 도입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그 밖에 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처벌 확대·강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벌금형 금액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완화된 인정 요건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가 부과됨으로써 영업비밀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최동식 변호사(dschoi@kimchang.com)
이현규 변호사(hyunkyuu.lee1@kimcha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 2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치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11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입규제 합리화

현행법은 택배 영업을 위한 드론과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제’를 적용함으로써 신규기업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습니다(안 제5조).

2.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동의제도 합리화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뿐 아니라 사물위치정보에 대하여도 그 수집 등을 위해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법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5조).

3. 위치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규정 신설

클라우드 서버 이용 등의 증가로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에도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처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의무, 손해배상책임, 재위탁 근거 등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6조의2),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통해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2 제1항).

인사·노무

임금체계 개편 관련 최근 동향 –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발간

김원정 변호사(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sungwook.jung@kimchang.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8월 17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실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사례들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에 이어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변화 속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면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임금체계 유형, 개편 방향 제시와 함께 그 과정에서 고려할 법적 쟁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놓은 점이 특징입니다. 즉,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요구되는 동의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판례가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노조와의 단체교섭 관련 쟁점 등에 대하여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가이드북의 폐기 요구와 함께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 추진 시 소송제기 등 법률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인정 여부 등 법적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기준으로서 (1)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2)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3)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4)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5)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6)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큰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주어진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판례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노사 협의를 통해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일반

MBK파트너스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지분 98.63%를 에큐온캐피탈에 매도

MBK파트너스는 2016년 7월 28일 HK 저축은행의 주식 98.63%를 에큐온캐피탈에 1,98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미국계 사모투자회사가 사실상의 인수주체가 되어 진행한 저축은행 인수거래라는 점에서 거래 초기부터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가 중요한 이슈였고, 에큐온캐피탈의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된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까지 연계되어 진행되는 등 거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다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MBK파트너스와 에큐온캐피탈을 모두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카버코리아 지분 60.39%를 인수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는 2016년 8월 8일 주식회사 카버코리아의 주식 60.39%를 4,169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이 인수주체가 되어 진행한 인수거래로 국내외에서 인수자금 조달이 이루어졌으며, 대상회사의 대주주 이외에 다수의 장외시장 소수주주들로부터의 지분 인수도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래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다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를 모두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법률실사, 계약서 작성,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의 중국민생투자그룹 자회사 지분투자 관련 자문

하나은행은 2016년 8월 29일 중국민생투자그룹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중민국제(CMIH)에 대하여 미화 2억 달러의 지분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대상 회사인 중민국제는 2015년 4월 전세계 145개국 1,700여 기업고객을 보유한 미국의 재보험사인 시리우스인터내셔널보험그룹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재보험업계와 중국시장을 잇는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중민국제에 지분투자를 통해 향후 중국 내 재보험업 시장에 간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하나은행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HRSG 사업부문을 GE에 양도

2016년 5월 10일,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HRSG(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문을 GE에 계약대금 3,0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중 국내 사업부문을 GE의 국내 계열회사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사업양수도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등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본건 거래 중 국내 사업부문의 양도를 종결하였습니다.

전북은행 및 JB우리캐피탈의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 관련 자문

JB금융지주그룹의 전북은행 및 JB우리캐피탈이 공동투자자와 함께 2016년 8월 29일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프놈펜 상업은행(Phnom Penh Commercial Bank, PPCB)의 지분 100%를 미화 1억 3,400만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은 JB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전북은행이 다른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과 함께 해외 현지은행의 경영권 지분(60%)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래구조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인수구조 설계, 공동투자자와의 협상에 따른 컨소시엄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체결,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국내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업무가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본건은 캄보디아 현지 은행을 인수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캄보디아 법률상 규제, 은행 주식 취득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전문지식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였습니다. 은행법, 회사법 등 관련 법률 제도의 운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당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지 않았던 캄보디아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로펌을 리드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한국의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 및 금융지주의 체계에 부합하는 은행의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등 내규의 정비 및 공동투자자를 포함한 주주 총회, 이사회, 임원의 적절한 권한배분을 위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전북은행 등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공동투자자와의 협상, 당국과의 의견조율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법원, 홈쇼핑의 모바일 주문 유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부당성 인정

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식회사 홈앤쇼핑(“원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원고가 2014년에 납품업자와 거래계약 체결 시, TV홈쇼핑 주문의 경우에는 혼합수수료 방식(판매수수료 중 일부는 정액(정액제)으로, 일부는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받는 형태(정률제)의 혼합형)으로, 모바일앱 주문의 경우에는 정률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바일앱 주문의 정률 수수료를 TV홈쇼핑 주문의 정률 수수료를 부분보다 약 2~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정하고, 자막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도록 유도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5년 6월 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1) TV 수수료는 정액과 정률의 혼합이고, 모바일 수수료는 순수하게 정률제이므로 단순히 정률 부분만을 가지고 모바일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 판매금액 대비 실제 지급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볼 때 TV 수수료가 모바일 수수료보다 오히려 높았고, (3)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홍보하는 것도 홈쇼핑 방송의 목적인 판매량 극대화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4) 다수의 홈쇼핑 사업자가 실제로 스마트폰 모바일앱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의 방송을 행해왔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통한 홍보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5) 동일한 제품에 대해 모바일 주문이 활성화된 이후 분당 효율과 납품업자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위주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최초의 제네릭 판매금지 사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국에 새롭게 도입되어 20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후, 의약품 특허분쟁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널제약사(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제조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특허권자가 심판청구 및 침해소송에서 긍정적인 심결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성공적으로 판매금지 결정을 얻어내어 제네릭 출시를 방어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네릭 제조업체는 특허심판원에 의약품 특허 목록(Green List)에 등재된 오리지널제약사의 제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에 제네릭 허가 신청을 하고 이를 오리지널제약사 등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통지서에서 제네릭사는 자신의 제품의 조성이나 출시 일자 는 밝히지 않고 등재된 제형 특허 무효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오리지널제약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식약처에 판매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제네릭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9개월간 잠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제네릭사는 판매금지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효심판과 침해소송 양쪽 모두에서 진보성 결여로 인한 제형 특허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제네릭사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제네릭 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무효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 불리한 심결을 얻었다면 앞선 9개월간의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제네릭사는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하에서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네릭 제품

의 조성조차 모르고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네릭사 또는 식약처 중 하나가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수궁하여 제네릭 제품이 제형 특허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석명해줄 것을 제네릭사에게 촉구하였고, 제네릭사는 자사 제품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내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네릭사가 자사 제네릭 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결 내렸으며, 이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간재 또한 폐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제네릭사에 의해 부당하게 특허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은 앞으로 유사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대출상품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은 2016년 7월 7일,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신한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고객들인 원고들에게 엔화대출상품을 판매한 사안입니다. 원심법원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의 대출상품 판매 시, 은행이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하며, (1)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거나, (2) LIBOR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금리가 아닌 경우, 해당 금리의 변동가능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1) LIBOR와 같은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인 금리가 기재되지 않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대출금리가 LIBOR금리에 연동된다는 사실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2) 은행이 LIBOR가 아니라 “MOR(Market Opportunity Rate)”, “기준금리”, “외화대출기준금리”, “내부금리” 등과 같이 해당 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금리 요소를 고객들이 알기 어렵게 기재한 경우에 있어, 그에 대한 구성요소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이들 금리는 피고(은행)들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로, LIBOR 금리와 스프레드 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의 단위로 변동이 되었는바, 은행이 해당 변동금리의 의미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설사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그 내용까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특히 설명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은행의 영업비밀에도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리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리가 가지는 의미와 그에 연계된 위험성과 같은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대출 거래의 현실을 충실히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대리하여 각 금리결정요인의 성격 및 특성, 거래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원심법원의 판단을 반박함으로써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무

외국펀드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2013년 외국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본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2016년 9월 30일 외국펀드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본 유의미한 조세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펀드들이 주주인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최초 외국펀드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이 유사사건에서 펀드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자 다시 외국펀드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1) 처분청이 외국펀드들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입증한 바 없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외국펀드로 단정하였으며, (2)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관련 예규나 유사 쟁점의 선 처분에 따라 펀드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1차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4) 쟁점 주식의 양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심판례에서 양수인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성실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려 노력한 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과세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심판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 중재·소송

ICSID 투자자-국가 중재사건에서 대한 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김·장 법률사무소는 아랍에미리트 법인인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의 네덜란드 자회사들(“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에 따른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신청인들의 중재 취하를 조기에 이끌어 냄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ISD 첫 승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2010년에 이루어진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한 약 2,400억 원의 법인세 등이 한국-네덜란드 양자간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며 2015년 5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4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해외 정부대리로펌 선정을 주도하고 국제 조세 및 국제중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조기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 구성하고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신청인들은 2016년 7월 26일 ICSID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취하를 알리는 서신을 보냈고, 지난 10월 5일 중재판정부가 절차 중단에 대한 결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법령, 제도, 정책 및 조치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양자간 투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철폐 등을 근거로 해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원자력,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ISD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ICSID에 따르면 ICSID 분쟁 중 일방적 취하로 종결되는 비율은 9.7%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ISD 중 가장 신속하고, 정부에 유리하게 종결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심·항소심에서 집행 거부된 국제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김·장 법률사무소는 1심 및 항소심에서 집행판결 선고가 거부된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중재판정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판정으로서,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론스타 펀드와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신청인”)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받은 선급금을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배당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선급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자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합작회사가 선급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합작회사를 대리하여 ICC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2년 간의 서면 공방 및 심리 기일을 거쳐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즉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합작회사의 자산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이 자산유동화법에 반하여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합의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보아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심에서 본건이 중재판정의 집행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합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송심에서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공공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 되었고 원고는 이를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마침내 2016년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자산의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이 자산유동화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하더라도 뉴욕협약의 채택 경위 및 목적, 중재제도의 효용성 및 국제거래의 안정 등을 고려하면 뉴욕협약상 ‘공공질서’는 민법 제103조가 정한 국내법적 ‘공공질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재과정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을 받은 이후,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판정의 집행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사무소가 중재 제기 전, 사건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하여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과정을 대리하고, 마침내 그 집행까지 맡은 사례로, 분쟁의 발생 시점부터 그 해소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증권

두산밥캣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두산밥캣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 18일, 두산밥캣 주식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30,028,180주를 공모가액 3만 원으로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 대하여 매출방식으로 공모하여, 매출총액 9,008억 4,540만 원 규모로 한국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IPO)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은 2012년에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상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본건 거래는 이러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모를 동시에 진행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사의 법률자문으로서 (1) 공모 및 상장 절차에서 수반되는 각종 계약서 검토, (2) 상장회사로서의 규제 사항 사전 정비, (3)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보호예수 절차의 진행, (4) 우리사주 배정관련 제반 검토, (5) 기업에 대한 상장 대비 실사 등 공모 및 상장에 관한 각종 국내법상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첫 국내·외 공모 사례로서 해외 공모절차와 동시에 진행된 본건의 특성에 따라 해외 자문사와의 면밀한 협조 및 협의를 통하여 해외 공모절차와의 일정 및 공모 관련 공시사항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은행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문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9월 27일, 총액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Tier 1 Subordinated Notes)을 해외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본건 발행은 Basel III가 도입된 이후, 신종자본증권으로서는 지난 2015년 6월에 이은 국내 두 번째 해외발행 사례입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4년 5월 Basel III에 따른 우리은행의 국내 최초 후순위채(Tier 2 Subordinated Notes) 해외발행 및 2015년 6월 우리은행의 국내 최초 신종자본증권 해외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에 이어, 본건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계약서를 비롯하여, 개정된 은행법 관련 규정상 변경된 자본인정기준을 등을 고려하여 규제 저촉 가능성과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자·배당지급조건, 중도상환조건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험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한국 지점 설립 본허가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 지점(Asia Capital Reinsurance Group Pte. Ltd., Korea Branch)은 지난 201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보험 지점을 위한 보험사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은 중국, 일본, 중동 등 아시아지역에서 재산, 해상,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의료 및 농업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재보험을 제공하는 싱가포르 재보험사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아시아캐피탈 리인슈어런스 그룹 피티이 리미티드를 대리하여 국내 재보험 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특정 공공기관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로 다른 모든 공공입찰 참가 까지 제한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

공단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한 K사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공단은 K사와 그 대표자에 대하여 ‘입찰자간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낙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공공입찰에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한다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본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입찰에 관하여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상 근거 없이 K사 및 그 대표자에 대하여 다른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관해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 준정부기관이 다른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관해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위임범위는 처분의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입찰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법률상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건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침익적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과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공공입찰 실무에서, 본건 판결은 위와 같은 공공입찰의 실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선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미국 시애틀 소재 Amazon Phase VIII 빌딩 매입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설정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맵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8호(“본건 펀드”)는 미국에 본건 펀드의 100% 자회사인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본건 REIT”)와 본건 REIT의 100% 자회사인 Limited Liability Company(“본건 유한책임회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본건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e-Commerce 유통 업체인 Amazon이 100% 책임임차하고 있는 미국 시애틀 소재 오피스 빌딩인 Amazon Phase VIII을 취득하는 투자(“본건 거래”)를 실행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상 부동산의 실사보고서, 매매계약서,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서, Amazon의 책임임대차 계약서 등의 검토, 협상과 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원활한 자금 조달 및 거래 진행을 위한 적절한 투자구조 및 거래 조건을 구상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 요건을 실시한 특허법원 판결 소개

특허법원은 2016년 1월 21일 제2 의약용도 발명에 관한 무효사건에서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라는 요건을 명확히 실시하면서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용도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며 제기한 무효심판 사건으로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으나, 특허권자가 그 심결에 대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고인 국내 제약사들은 (1) 이 사건 특허 약물을 이용한 임상시험의 시작을 언급한 문헌과, (2) 돌연변이가 상이한 다른 암 세포주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 약물을 사용하는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특허법원은, 임상시험의 시작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허의 유효성분을 포괄하는 화합물이 환자에게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돌연변이가 상이한 다른 암 세포주에 대한 선행기술로부터 특허발명의 의약용도가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원은 “암 치료제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선행발명으로부터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성공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행발명에 의해 암 치료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암에 대해서는 병리기전 내지 치료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았

고, 항암제 분야에서는 돌연변이의 차이로 인한 약물의 반응성 예측이 어려운데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암에 관한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도 없었다는 점에서 선행발명들로부터 특허발명의 성공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성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수상소식

세계 100대 로펌 중 68위 선정 - The American Lawyer's Global 100 (2016)

미국 유명 법률월간지 The American Lawyer가 2016년 10월호에서 발표한 'The Global 100(전세계 100대 로펌 랭킹)' 특집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 중 하나로 랭크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규모 기준으로 선정한 'Most Lawyers' 부문에서 68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Most Revenue' 부문에서 59위, 파트너 당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선정한 'Most Profits Per Partners' 부문에서 4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Global 100'은 The American Lawyer가 매년 발행하는 랭킹 특집으로,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와 출판사 자체 리서치를 바탕으로 most lawyers(변호사 규모), most revenue(매출액), most profits per partner(파트너 당 평균 수익)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전세계 1~100위 로펌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50대 로펌 중 10위 선정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6)

미국 유명 법률월간지 The American Lawyer가 2016년 11월호에서 발표한 'The Asia 100 Survey' 특집에서 'Asia 50(아시아-태평양 지역 50대 로펌)' 부문 10위에 김·장 법률사무소가 랭크 되었습니다.

The American Lawyer는 매년 로펌 대상 설문조사와 자체 리서치를 통해 변호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 랭킹 특집인 'Asia 50'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전체 변호사 규모 기준 상위 50개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을 선정한 'Asia 50'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변호사 규모 기준 상위 50개 글로벌 로펌을 선정한 'The Global Player'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4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ALB Korea Law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제4회 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4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최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 정계성 변호사가 'Managing Partner of the Year(올해의 대표 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올해 시상식에서 저희 사무소는 총 30개 부문 중 'Korea Law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을 포함한 아래 12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Firm Categories - 단독수상

- Korea Law Firm of the Year
-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Kye Sung Chung
-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Firm of the Year
- Labour and Employment Law Firm of the Year
- Shipping Law Firm of the Year
- Tax and Trusts Law Firm of the Year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Law Firm of the Year

Deal Categories - 공동수상

- Korea Deal of the Year: MBK Partners' Acquisition of Homeplus from Tesco PLC
- Debt Market Deal of the Year (Midsized): Korea's Offshore RMB "Panda Bond Offering"
- Equity Market Deal of the Year: Mirae Asset Life Insurance's IPO
- M&A Deal of the Year (Midsized): Sale of 57.95% Equity in KUMHO Industrial Co.
- M&A Deal of the Year (Premium): MBK Partners' Acquisition of Homeplus from Tesco PLC, Merger Between KEB and Hana Bank

‘ALB Korea Law Awards’는 Thomson Reuters 소속의 아시아지역 법률전문 미디어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로펌 제출자료, 미디어의 자체 리서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판정단 투표를 통해 분야별 우수 로펌, 변호사, 업무실적 및 사내법무팀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China Law & Practice Awards 2016’에서 6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상(Korea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China Law & Practice Awards는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그룹인 ALM 계열의 중국 법률 월간지 China Law & Practice가 매년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각 로펌의 제출자료와 출판사의 독자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 지역 업무관련 우수 팀, 로펌, 변호사, 사내법무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9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중국 그룹은 분야별로 특화된 중국 인력들이 모여, 다양한 업종/지역별 실무 경험과 중국 내 전문집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에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으로 선정 - IFLR1000 Financial & Corporate 2017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Financial & Corporate’ 2017년판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5개 전 분야의 국내 선두로펌(Tier 1)에 1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9명의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 Leading Lawyer로, 1명의 변호사가 Rising Star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IFLR은 저희 사무소가 공정거래와 인수·합병 분야에서 뛰어난 피드백을 받았다고 소개하며, “김·장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이며,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 내어 만족스러웠다(very attentive to client needs and produced quality results. I am satisfied with working with them)”, “해외 인수·합병 관련 뛰어난 스킬과 노하우를 갖추었다(it has excellent skills and know how regarding M&A in outbound issues)”와 같은 고객들의 코멘트를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IFLR1000 Financial & Corporate’은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Euromoney가 발행하는 글로벌 로펌 디렉토리, 로펌 제출자료와 변호사/고객 인터뷰 등 독자적인 리서치를 통해 국가별·분야별 로펌 순위를 평가합니다.

Firm Ranking (Tier 1)

- Banking and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M&A
- Restructuring & Insolvency

Leading Lawyers

정계성, 정경택, 허익렬, 정진영, 박종구, 조영균, 윤희선, 고창현, 신창희

Rising Star

정명재

17개 분야에서 Outstanding으로 선정 - Asialaw Profiles 2017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Euromoney 계열의 법률 출판사 Asialaw가 최근 발행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디렉토리 'Asialaw Profiles 2017'



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전체 18개 분야 중 17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Outstanding'에, 1개 분야에서 우수 등급인 'Highly recommended'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Asialaw Profiles는 한 클라이언트의 코멘트를 인용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한국 최고의 로펌이라는 명성에 부응하며, 광범위한 산업·업무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지식을 갖추었다(Kim & Chang lives up to its reputation as the premier Korean law firm. The depth and scope of its expertise covers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practice areas)"고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별도로 발행된 'Asialaw Leading Lawyers 2016'에서 저희 사무소 19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Leading Lawyers로 소개되었습니다.

Asialaw Profiles는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4개 국가, 18개 업무분야에 대해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고객 인터뷰, 자체 리서치 등을 통해 'Outstanding',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3개 등급으로 국가별·분야별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sialaw Leading Lawyers'는 매년 변호사 및 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별·분야별 leading lawyer를 발표하는 leading lawyers 디렉토리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선정된 세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Outstanding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mpetition & Antitrust
- Construction & Real Estate
- Corporate/M&A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
-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nvestment Funds
- IT, Telco & Media
- Labour & Employment
- Private Equity
- Projects & Infrastructure
- Restructuring & insolvency
- Shipping, Maritime & Aviation
- Taxation

Highly recommended

- Energy & Natural Resources

Leading Lawyers

정계성, 정경택, 양영준, 백우현, 최동식, 노영재, 정진영, 윤병철, 박종구, 윤희선, 허영만, 박은영, 김진환, 정명재, 김진오, 정교화, 서덕일, 이호인, 변섭준

15개 전 분야 국내 선두 로펌으로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영국계 유명 법률출판사 Legalease에서 발행하는 아시아지역 로펌 디렉토리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5개 전 분야에서 선두 로펌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18명의 변호사들이 Leading Individuals로, 6명의 변호사들이 Next Generation Lawyers로 선정 되었습니다.

The Legal 500은 주요 고객사의 코멘트를 인용하여 "한국 및 외국 변호사 인력을 두루 갖춘 김·장 법률사무소는 한국 법률에 대해 1등급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적 법률 자문을 잘 수행한다(a mix of Korean and foreign

counsel, ‘works together very well, supporting the international legal advice with first-rate Korean law advice’)”며, “언제나 수준급 서면 및 구두 변론(consistent quality of advocacy, both written and oral)”을 제공하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선정된 세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Firm Rankings

- Antitrust & Competition
- Banking & Finance
- Capital Markets
- Corporate/M&A
- Dispute Resolution
- Employment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s & Trade marks
- International Arbitration
- Projects & Energy
- Real Estate
- Shipping
- TMT
- Tax

Leading Individuals

- Antitrust & Competition: 정경택
- Banking & Finance: 조영균, 명진아
- Capital Markets: 정명재
- Corporate & M&A: 노영재, 박종구, 허영만, 이상구
- Dispute Resolution: 한상호
- Employment: 현천욱, 김원정
- Insurance: 안재홍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 International Arbitration: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 Shipping: 정병석, 이진홍

Next Generation Lawyers

- Corporate & M&A: 이순열
- Insurance: 김준영
- Intellectual Property: 이상영
- International Arbitration: 조은아, 김혜성
- Shipping: 김현주

분쟁해결 분야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제2회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 South Korea)’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는 Euromoney계열의 법률 미디어 Asialaw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각 로펌의 제출자료 및 변호사들의 인터뷰 등 독자적인 리서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재 분야 우수 로펌과 팀, 변호사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9월 27일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실무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수 많은 대형 국제 중재,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A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Asian Legal Business M&A Ranking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Thomson Reuters 소속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LB(Asian Legal Business) 9월호에 발표된 'M&A Rankings 2016' 특집에서 국내 선두로펌 그룹(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예년에 이어 M&A분야 국내 선두로펌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번 랭킹 조사는 2015년 7월~2016년 7월 중 진행 및 종결된 업무에 대해 각 로펌의 제출자료 및 기타 시장자료를 토대로, M&A 자문건수·복잡성·규모,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및 입지, 주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 등을 측정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기업인수·합병 그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수·합병 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World Tax 2017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월 발표된 'World Tax 2017'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선두 로펌(Tier 1)에 선정되었습니다.



'World Tax'는 Euromoney계열의 조세전문미디어 International Tax Review가 발행하는 전세계 로펌 평가지로, 조세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적의 규모, 전문성 등을 토대로 순위를 선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 클라이언트는 “김·장 법률사무소는 80년대부터 줄곧 1등급 조세 로펌이었다(I have known [Kim & Chang] as a first class tax firm since 1980)”며, 저희 조세파트의 업무에 대해 “훌륭하고 매우 뛰어난 업무능력을 자랑한다: 즉, 신속하고, 선조치에 강하고, 기술적 분석적 능력이 뛰어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Kim & Chang] has done a great job, fabulous performance: alert, pro-active, technically and analytically savvy, and great in communication.)”고 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세파트는 150여명의 변호사,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실무전문가 등 조세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지원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Work-Life Balance 로펌 선정 - Euromoney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Euromoney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 2016'에서 'Best National Firm for Work-Life Balance'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Euromoney가 매년 주최하는 'Euromoney Asia Women in Business Law Awards'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으며, 로펌 제출자료, 변호사 인터뷰 및 독자적인 리서치 등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영향력 있는 여성 변호사와 여성 인력 개발에 앞장서는 로펌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9일 홍콩 JW Marriott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Newszine

Newszine